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의6서식] <신설 2020. 9. 28.>

의견제출서

사전통지 내용					
제출자	성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	전화번호	
의 견					
기 타					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의2제2항,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1조제1항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